

취급제한 업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첫째

직·간접의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둘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셋째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넷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섯째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여섯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일곱째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여덟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아홉째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여러분은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중 취급제한업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시서 퇴직 후의 재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윤리제도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www.mpm.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취업심사과

www.mpm.go.kr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기 쉬운 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업무취급 제한제도란 무엇인가요?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 가능) ”

취급제한 업무는?

법에 규정된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외의 업무는 퇴직 이후에 취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처리란?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로 공문서에 결재·검토·협조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명한 경우 등을 말하며,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가 해당됩니다.

취급이란?

취업 또는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 변호사법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담당사건 수임제한 규정이 있어요!

퇴직 후 제한되는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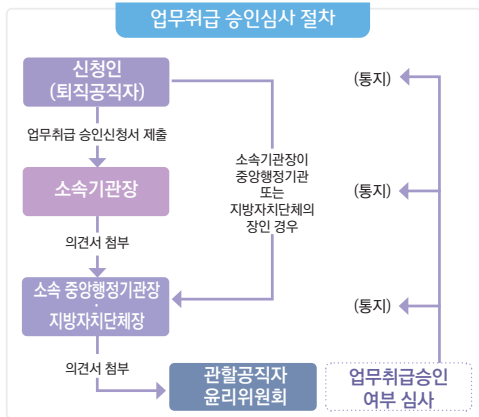
신청인은 '업무취급 승인신청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며, 소속기관은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송합니다.

신청시기는?

제한업무 취급 전에 신청합니다. 취업한 후라도 제한업무 취급 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사유는?

국가안보·공익 목적 등 해당업무 취급이 필요하고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의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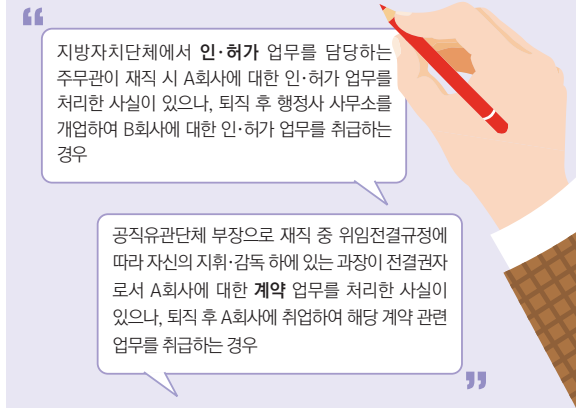
업무취급이 불승인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과장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시 처리한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퇴직 후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해당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국장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시 **재정 보조 및 감독·감사** 업무를 처리한 A지방공사 임원으로 취업하여 해당 재정 보조 및 감독·감사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업무취급이 승인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재직 시 A회사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퇴직 후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B회사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 공직유관단체 부장으로 재직 중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과장이 전결권자로서 A회사에 대한 **계약**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퇴직 후 A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계약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특히,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 있나요?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1급(상당) 이상 직원



① 기관업무 취급제한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취급이 제한됩니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 가능)

②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퇴직 후 2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업무내역서를 2회(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작성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취업사실신고서 제출의무

퇴직 후 10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신고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취업이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취업심사 → 대상기관 검색

취업심사와 업무취급승인심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취업심사		업무취급 승인심사
	취업확인심사	취업승인심사	
심사 목적	취업가능 여부 (취업가능 vs 취업제한)	취업승인 여부 (취업승인 vs 취업불승인)	업무취급승인 여부 (업무취급승인 vs 업무취급불승인)
심사 대상자	일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α)	일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α)	모든 공직자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신청 시기	취업개시 30일 전	취업개시 30일 전	제한업무 취급 전 (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대상 업무	부서업무 or 기관업무	부서업무 or 기관업무	본인 처리 업무 or 기관업무
심사 내용	업무관련성 여부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업무취급 승인사유 (공익목적 + 영향력행사가능성)

※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한 경우에도 제한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아야 해요!